-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도모하고자 보훈수당 지급대상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금 확대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정의에 '보국수훈자' 추가(안 제2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보국수훈자 수당 추가(안 제7조제1항제8호)
 - (추가)보국수훈자는 월 5만원 이내 보훈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안 제7조제1항제9호)
 - (현행) 월 25만원 이내 → (개정안) 월 30만원 이내
- 기타 상위법령 근거 조항 현행화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 (안 제2조제5항,제7항,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부의 시책)

○ 예산조치 : 별도조치필요

○ 그 밖의

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10.4.~2023.10.24.)

다. 비용추계서 첨부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9.26.가족지원과)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에 '보국수훈자'를 추가하였고(월 5만원이내 지급),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지원금 확대를 마련하였으며, 지원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314백만원이나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가 고령으로 년평균 50명 감소예정임(지원액 년평균 △30백만원)

※ 연도별 유공자 현황 및 소요예산(주민복지과)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н] —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비고
계	525	314	480	287	435	261	390	234	
보훈명예수당 (보국수훈자)	43	25	48	28	53	32	58	35	5명 승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482	289	432	259	382	229	332	199	대상자 연평균 50명 감소

○ 관계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